

제 646 호
1978. 3.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741 호 :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등개정규칙 3

◎ 교 시

제 11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10

제 116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12

제 117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2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3

제 119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지적승인 14

제 12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4

제 12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5

제 12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5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6

제 12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7

제 125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8

제 126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1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27 호 :	도시계획지구 (미관지구) 변경지적승인.....	19
제 129 호 :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9
제 13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0
제 13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및 변경결정.....	21
제 132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21
제 133 호 :	하천의점용(지하인수 (주수) 및 공작물설치) 허가.....	22

◎ 공 고

제 97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공람및 의견청취.....	22
제 98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공람및 의견청취.....	24
제 99 호 :	관광숙박업종사원및국내관광안내원 자격시험시행공고	24
제 100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27
제 101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27
제 102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실시계획공람공고.....	28
제 103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변경지정공고.....	28
제 104 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공사완료.....	28
제 10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30
제 107 호 :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 파기명령 (처분) 공고.....	30
제 108 호 :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및 파기명령 (처분) 공고.....	31
제 109 호 :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환지계획변경및 추가환지계획 인가공고.....	31
제 111 호 :	서울특별시연료공업 협동조합해산공고.....	32
제 112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지정공고.....	32
제 113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지정공고.....	33
제 117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33
제 118 호 :	간이요금징수소설치공고.....	38
제 120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 정지지정공고.....	38
제 121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공람및 의견청취.....	39
제 122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공람및 의견청취.....	45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실시계획공람공고.....	46
제 124 호 :	도시계획시설 (전신전화국) 건물신축공람공고.....	47
제 125 호 :	환지구분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 공고.....	47
제 294 호 (도봉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47
제 12 호 (서대문공고) :	서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회계공인신조 사용공고.....	48
제 19 호 (마포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48
제 88 호 (관악구공고) :	공인의 공고.....	48

◎ 사 명

규 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3월 29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41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본문중 제 2 조를 제 4 조로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안과에는 보안제, 외근제와 방범순찰제를 둔다.

제 4 조 제 1 항의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찰서 과·계 사무분장표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경 무	경 무	1. 직인관수			
		2. 자체보안관리			
		3. 경찰의전 및 행사, 회의 통제			
		4. 경찰연혁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			
		5. 직원복무규율 및 근태			
		6. 경찰직제 및 정원관리			
		7.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8. 직원의 입면, 전보 및 상훈			
		9. 교육, 훈련 및 근무, 경력 평가			
		10. 인사기록관리와 연금업무			
		11. 정원경찰관 입면 제청			
		12. 자체경비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			
		13. 경찰비위조사 및 감찰업무			

과	별	분 장 사 무
	경 리	14. 경찰관 징계위원회 운영 15. 경찰관의 소청업무 16.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처리 17. 서정쇄신추진위원회 운영 18. 경찰공보활동 19. 민원봉사실 운영 20. 당직 및 감독순시 지정 21. 경찰관 신분증 및 제증명 발급 22. 경찰관의 후생복지 업무 23. 문서의 통제, 수발, 보존관리 24. 경찰사무인계 25. 경찰관 흉장관리 26. 우표수발 27. 청내단속 및 교용원의 감독 28. 경찰 행정감사 29. 기타, 서내 타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세출예산편성과 결산 2. 예산집행 및 계약 3. 세입에 관한 업무 4. 지출에 관한 업무 5. 도급경비 및 현금수납 6. 세입, 세출의 현금수납 7. 정부유가증권 수납 8. 임차금품의 출납관리 9. 물품구입 및 출납관리

과	별	제	별	분	장	사	무
보	안	보	안	10.	국·공유 재산관리		
				11.	국가채권관리		
				12.	급대어품 출납관리		
				13.	진압장구 출납관리		
				14.	차량유지관리 및 유류출납		
				15.	운전원 교양감독		
				1.	광고물허가 및 지도단속		
				2.	신용조사업 지도단속		
				3.	총포화약류 허가 및 지도단속		
				4.	사격장 지도단속		
				5.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		
				6.	유실물, 배장물 및 표류품 업무		
				7.	윤락행위단속 및 풍속사범 지도단속		
				8.	기부금품 모집단속		
				9.	문화제, 도량형기, 묘지, 화장장, 시장, 노점등 조장행위 협조업무		
				10.	타기관 교발사전 처리		
				11.	즉심업무처리 및 벌과금 징수납부		
				12.	즉심 피의자 유치 호송 및 보호실 관리		
				13.	산림관계 협조업무		
14.	불법 수렵행위 단속						
15.	자연보호 저해사범 지도단속						
16.	청소년 선도보호						
17.	소년범죄중 소년법 제4조 제2,3호에 해당하는 보 호사건 업무						
18.	미성년자보호법 및 아동부리법 위반 지도단속						
19.	가출인, 미아수배 및 보호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부
경 바	경 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긴급 비상배치시 거점확보 및 무선망 구성 7. 112신고 출동처리 8. 기타 특별 명과사항 1. 일반경비 (행사 및 혼잡제해) 계획수립 및 시행 2. 해해경비계획 수립 및 시행 3. 비상경계 및 비상소집 계획수립시행 및 병력동원 운용 4. 다중 범죄 진압대책 및 병력운용 5. 경호경비 자료의 유지관리 및 교양 6. 경호경비 계획수립 및 시행 7. 경찰작전 계획수립 및 시행 (적정상황처리 포함) 8. 임시 편성부대 및 초동타격대 운용 9. 전시 차안 계획수립 및 시행 10. 중요시설 경비 및 청원경찰 지도감독 11. 민방위업무 협조사항 12. 외국공관 경비 13. 검문소운영 및 검문검색 (기능별, 업무수행시 검문 검색 제외) 지도감독 14. 야간초소 운영지도 감독 15. 야간통행증 발급 16. 종합상황실운용지도 감독 17. 전투경찰순경 지도감독 18. 예비군 무기, 탄약관리 19. 자체 무기사고 처리 20. 무기 및 탄약관리 및 지도감독 21. 다중범죄 진압 화학장비 관리 22. 방위소집자 운용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교 통	23. 경찰관 숙소부 정리 1. 교통 경찰관 교양 및 지도감독 2. 교통소통계획 및 통계관리 3.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 실시 4.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안전대책 5. 교통사고 조사처리 6.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7.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결정 및 집행 8. 교통사고 야기 및 법령위반차량(운전자포함) 수배 9. 교통순시원 및 모범운전자 운용과 지도감독 10. 도선업 지도단속 11. 기타 교통업무와 관련사항
	통 신	1. 통신장비관리 및 자체출납 2. 통신기기의 시설 및 보수 3. 암구호서 출납보관 4. 경비전화 선로공사 및 보수 5. 전문발·수신 6. 무선 통신지령(일제지령 포함) 7. 교환원 교양 및 지도감독
수 사	수 사	1. 수사정보비 출납 2. 범죄통계 작성 3. 민원사건(교소, 교발) 수사 송치 4. 형사사건 수사송치 5. 사건송치 및 피의자 호송업무 6. 유치장관리 및 입감자 지문채취

과 별	계 별	분 상 사 무
	형 사	7. 유치인 영치금품 업무 8. 수형자 및 소제수사업무 9. 현장감식 및 변사체 처리 10. 피의자 사진관리 및 지문조회 11. 수법공조업무 12. 우범자 관찰 보호 13. 병 사 업 무 14. 사기사건(비다바이 제외) 수사 15. 새생활센터 운영 16. 사건기록 관리 1. 횡령, 배임 및 독직사건 수사 2. 선거사범 수사 3. 통화공채위조사범수사 4. 마약사범 수사 5. 금용 및 경제사범 수사 6. 밀수(특정외래물 포함) 및 탈세사범 수사 7. 회사, 미합회사범 및 은행사범 수사 8. 기타 일반범죄 수사 9. 강력범 수사 10. 폭력범 수사 11. 도벌수사 12. 치기사범 수사 13. 강탈사범수사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1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일부변경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내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
이 신설 결정 및 일부 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78.3.2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조서: 별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390	광명리 274-7	광명리 418-1	
"	"	1	2	10	87	" 185-8	" 182-87	
"	"	2	1	8	360	" 281-57	" 231	
"	"	2	2	8	550	" 234	" 225	
"	"	2	3	8	355	" 262	" 235	
"	"	2	4	8	100	" 산 93	" 419-14	
"	"	3	1	6	300	" 159-1	" 153-1	
"	"	3	2	6	60	" 153-7	" 153-1	
"	"	3	3	6	60	" 159-2	" 161-2	
"	"	3	4	6	90	" 159	" 161-20	
"	"	3	5	6	53	" 163	" 16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투원(冊)	연장(冊)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6	335	광명리	172-2	광명리	164		
"	"	"	7	"	232	"	165-8	"	183-40		
"	"	"	8	"	346	"	164	"	209		
"	"	"	9	"	366	"	179-2	"	166		
"	"	"	10	"	59	"	172-2	"	171-16		
"	"	"	11	"	310	"	175-4	"	167		
"	"	"	13	"	114	"	220	"	221		
"	"	"	14	"	445	"	221	"	189-46		
"	"	"	15	"	62	"	227-5	"	216-19		
"	"	"	16	"	88	"	211-13	"	206-4		
"	"	"	17	"	146	"	211-4	"	276-69		
"	"	"	18	"	172	"	206-27	"	276-54		
"	"	"	19	"	166	"	208-1	"	206-16		
"	"	"	20	"	255	"	285-2	"	266-2		
"	"	"	21	"	212	"	259-3	"	233		
"	"	"	22	"	258	"	350-1	"	383		
"	"	"	23	"	116	"	272-2	"	373-1		
개정	"	"	24	"	302	"	351-4	"	358-1		
변경	"	"	24	"	510	"	274-4	"	358-1	208=추가	
기정	"	"	25	"	220	"	385-1	"	357		
변경	"	"	25	"	376	"	380-13	"	358-2	176=추가	
신설	"	"	26	"	315	"	"	"	229		
"	"	"	27	"	116	"	272-2	"	373-6		
기정	"	"	28	"	1,090	"	"	"	"		
변경	"	"	28	"	1,090	"	374-7	"	504-18	일부위차변경	
신설	"	"	29	"	140	"	237	"	358-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2

서울특별시 장

○ 결정 조 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 목동 408-34 외 2필	2,314 (700명)	연인운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7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3

서울특별시 장

○ 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주차장	서초동 232-8 일부	1,356㎡(약410명)	은성빌딩주차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 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5 호 (77.4.14)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3.23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도곡동삼 7 의 2 의 3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단국대학교 신숙건설

다. 사업의규모 (면적) : 11,873.90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 300 의 262 한신맨션아파트 134 호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박중숙

마. 사업의착수및 준공예정일

착공 : 1978.5.

준공예정일 : 1979.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 토지명세와 소유권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영동구회경리 추가지구	1104-1	채비지	792.70 평		학교법인단국대학
	1104-2	"	731.20 평		"
도 곡 동	삼 7-2	임 야	3,720 평	박배돈 1-11	합 경 자
	삼 7-3	"	6,630 평	"	"

○ 서울특별시고시제 119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78.3.8)로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규정과 건설

부고시 제 41 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3.2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지적승인조서

구분	지구명	종별	순위	기점	종점	연장(㎡)	비고
기점	미관지구	4종	72	청담동	도곡동	3,800	도로양측폭 12미터 지역
변경	"	"	"	"	학동(구청부근)	1,100	"
신설	"	"	95	학동	도곡동	2,380	"
"	"	2종	64	"	학동	320	4종→2종변경구간
기점	"	4종	74	논현동	청담동	3,350	도로양측폭 12미터 지역
변경	"	"	"	"	학동(구청부근)	1,700	"
신설	"	"	96	학동	청담동	700	"
"	"	2종	65	"	학동	220	4종→2종변경구간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0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3.
 서울특별시장

○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육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중로	1	17	20㎡	2,420㎡	대흥동(대3-14)	합정동 373(대3-8)	
변경	대로	3	126	28	"	"	"	북원확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1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동대문관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이 서울특별시고시 제 98 호 (78.3.15) 로 결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가. 학교 지적승인내역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시는 동대문구청도시경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한다.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휘경국민학교	동대문구 휘경동 301-4	21,603	기존학교
"	답십리 "	" 남십리동 274	14,469	"
"	전농중전농여중	" 전농동 58	46,412	"

1978. 3. 2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12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건설,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일부변경하고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3. 24.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대로	3	40	25m	11,530m	군자동 (광토 5호)	수유동 (중1-47)	도봉구변동함내 1,500m 구강하천제방밑으로
변경	"	"	"	"	"	"	"	위치변경
신설	"	"	127	25	550	번동472	번동464	하천복개처리에 따른 도로신설
"	"	"	128	"	520	장위동 158-3	장위동 121-7	남대문중학교부근앞에 우회도로신설
"	"	"	129	"	870	회경동 6-35	이문동 94-2	중랑교부근우회도로신설

나. 광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종류	번호	광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교통광장		번동광장	번동 367-1 일대	7,82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3호

도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의 영등포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인한다.

1978.3.24.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승로	3	69	12m	350m	개봉동	개봉동	
변경	"	"	"	"	580	"	교척동	실연감및위치대로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 3. 16)의 권한 내임

○ 변경결정주소

사람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라 광합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3. 25.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정	중 정	비 고
기정	소로	3		6	80	수유동 277-4	수유동 281	위치 변경
변경	"	"		"	"	"	"	
기정	"	"		"	160	갈계동 산 171-6 일대	중계동 30-7	제한광고 진입로
변경	중로	2	164	15	300	"	산 30-1	
기정	소로	3		6	360	우이동 16-6 전	우이동 154-36	도선사 진입로
변경	중로	3	97	12	600	"	186-4	
기정	소로			3	8	미아동 133-26	미아동 133-26	제 지
변경	"	"	"	"	"	"	"	
기정	"	2		8	450	미아동 84-57 일대	미아동 50-2	미아아파트일 위치 변경
변경	"	"	"	"	"	"	"	
기정	"	3		6	300	도봉동 30-1	도봉동 61	철도 변위치 변경
변경	"	"	"	"	"	"	"	
기정	"	11		"	110	오금동 620	거여동 산 23-	보인상고 진입로
변경	"	1		10	180	" 159-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5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구분	시 장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롯데쇼핑센터	중구율지로 1가 180-6 일대	9,100㎡ (2,753평)	건축연면적 12,011 평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6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6호(78.3.
 22)로 시설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독동 408-34 외 2필	2,314㎡ (700평)	영인운수(주)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도시계획지구 (미관지구)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지구 (미관지구) 변경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 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8.3.27

서울특별시 장

가. 미관지구변경지적승인조서

구분	지구명	종별	번호	축	연장	기 점	중 권	비 고
기정	미관지구	4종	42	도로변 양측12m	1,000m	등촌동광장	화곡시장	
변경	"	2종	66	"	"	"	"	종별변경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도면성락)

○서울특별시고시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93 호 (78.3.14) 및 부고시제 115 호 (78.3.22)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9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시흥동 34 번 지의 4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시행면적및규모 : 98,065 (29,716평)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영등포구 여의도동 1-885 한양주택대표 배종열

마. 수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비고
서흥동 58-2의 20 필지	임야, 분묘	98,065 (29,716평)	여의도동 1-885 배종열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공 : 시행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

2) 준공 : 78.9.30

사. 토지이해관계인주소성명 : 전항과 같음.

아. 도면 : 별첨(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130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76. 6.21)로 시설절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3.29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회기동상1-1 이문동 264-412번지
 -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경희대학교
 - 면적및규모 : 6,573.96㎡ (1,988.62평)
 - 시행자주소, 성명 : 동대문구회기동상1 학교법인교황재단 이사장 오정명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8.3.
나. 준공예정일 : '79.2.28.
 -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생략)
 - 공사설계도면 : 별첨(도면생략)
-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동대문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31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및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가, 도로변경 및 신설조서

(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낸다.

1978.3.29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가	사 점	중 점	비 고
기정	중로	2	74	15 ^M	3,800 ^M	성수동3가	자 양 동	
변경	"	1	183	20	3,800	"	"	국인과학
기정	"	1	55	20	6,810	성수동2가	구 의 동	
변경	"	1	55	20	5,610	국도스원지	"	연장축소
신설	대로	3	125	25	1,200	경마장인구	목도스원지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32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설시계획인가

1. 서울시 고시 제 276호 (77.8.9)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건물 등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없으므로 개별문자는 하지 않으며,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고시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보아게 한다.

1978.3.30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위치 : 성동구 중곡동 250의1 - 성동구 중곡동 43의5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중곡천 간선하수도)
- 3. 사업의 규모
 암거 3×3×3=347
 " 3.3×2.7×3=182
 " 3.5×2.5×2=51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 78.3. -78.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133 호

하천의점용 (지하인수 (주수) 및공작물설치) 허가

다음과같이 하천의점용 (지하인수 (주수) 및 공작물설치) 허가를 하천법제 25조 제1항및제 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함.

1978.3.

서울특별시장

허가년월	위 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허가인수량	준공기한	피허가자 주소, 성명
78.3	경기도 시흥군서면 소화리 700-16번지 선 (안양천)	660.44㎡	지하인수 및 공작물설치	1344t/일	78.4.30	동신화학 (주) 대표 김보현

끝.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97 호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60호(75.10.10) 로 고시된 장위동 지대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시켜 키고져 이에 공고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명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3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랑 개 요</p> <p>1. 사업장위치 : 성북구 장위동 (74-140) - (92-5)</p> <p>2. 사업의종류와 명칭 : 장위동 지내 도로 개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폭 10 m 나. 연장 127 m</p>	<p>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 78.3.14 -78.6.12</p> <p>6. 사용토는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공 사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장위동 72~ 1	대	318	안국동 17-8	신원일	
2	" 74~ 178	도	155	강무로1가 53-1	주식회사 제일은행	
3	" 75~ 634	대	3	장위동 75~200	이연형	
4	" 75~ 635	대	69	" 68	이종걸	
5	" 75~ 636	대	10	" 75~407	노진일	
6	" 74~ 261	대	132	" 89	강유두	
7	" 74~ 36	대	28.4	" 76	윤명섭	
8	" 74~ 25	전	12	" 76	윤명섭	
9	" 74~ 26	대	51	" 74	허순진	
10	" 74~ 27	대	92	" 76	윤명섭	
11	" 74~ 313	대	5	" 89	강유두	
12	" 74~ 30	대	126	" 74~ 30	이준녀	

공 사 건 물 조 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장위동 75~230	연와조세면 와즙주택	13 m ²	장위동 75~230	오경안	기. B.6

○ 서울특별시공고제 98 호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
공람및의견청취

1. 성북구청 시행 장위동내 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저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시키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공 사 토 지 조 서

1978.3.23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의집행지 : 성북구 장위동
272번지
2. 사업의종류 : 장위동 내내 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압거 (1.2×1.2) L=63m
압거 (1.5×1.8) L=90m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8.3.14-'78.6.12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장위동 272	구거	90.4평	국		

○ 서울특별시공고제 99 호

관광숙박업종사원및국내관광
안내원자격시험시행공고

1978년도 제 1차 서울특별시 관광
숙박업 종사원 (지배인 제외) 및 국내관광

안내원자격시험을 관광사업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
행함을 공고한다.

1978.3.25

서울특별시장

<p>1.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p> <p>가. 교부및접수기간 : 1978.4.4-4.8, 13:00 (공휴일 제외)</p> <p>나. 교부및접수처 : 서울시청 관광안내소</p> <p>2.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p> <p>가. 시험과목</p>		
시 험 별	1 차 시험 (면접시험)	2 차 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관광숙박업 종 사 원	현관객실및식당실무	호텔관리개론 (현관, 식당및객실 관리중심) 관광사업개론 관광법규 영어
국내관광 안 내 원	응모, 태도, 안내능력	국사
		한국지리 관광자원론 (관광지 소개중심) 일탄삼식
<p>나. 응시자격</p> <p>1) 이시험실사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 (1960.3.25 이전 출생자)</p> <p>2) 관광사업법 제 31 조에 정한 관광종사원 경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p> <p>3) 면접시험만을 응시할수 있는자와 서류 전형만을 응시할수 있는 자는 전(1) (2)와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 31 조 제 3 항 3 호와 제 2 항 1, 2 호 해당자</p> <p>3.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p>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1 차 시험 (면접시험)	78.4.16 10:00	국제대학교 (서대문우체국앞)
2 차 시험 (필기시험)	78.4.23 10:00	

4.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1차시험 (면접시험)	78.4.20	서울시청계시관
2차시험 (필기시험)	78.5.1	서울시청계시관

5.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응시원서 (서울특별시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초본 (제출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 1부

다. 신원증명서 (제출일기준 1개월이내 발행) 1부

라.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일기준 1개월이내 국, 공립 병원장 발행으로
관광사업법 제3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질병에
이환되지 아니한지)

마. 사진 2매 (반명합판 탈모 상반신외 3개월이내 촬영)

바. 응시수수료 1,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사. 학력 및 경력증명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응시 수 있는자)

6. 기 타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송된 원서는 접수마감
일자까지 접수된것에 한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와 답안지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09:00까지 시험장에
입장완료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광과 (75-6957) 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공고제 100 호

공인개각 사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3.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 1978.3.24

2. 인 영 : 다음 공인의 인영



태능경찰서장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101 호

공인개각 사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3.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일자 : 1978.3.24

2. 인 영 :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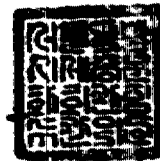
공인의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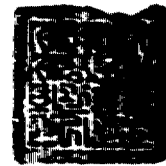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장의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계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심수관회의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출판부의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분임경리관의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102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79 호 (78.3.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시설용지인 아래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03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 1. 암사, 영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3 호 (78.2.2) 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를 일부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 2. 환지에정지가 변경 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정지 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발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된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여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 한다.

1978.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04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공사 완료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5 호 (77.6.11) 로 시행 허가된 동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7조 2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하고 이를 공고한다.

가. 로선조서

2. 본 공사완료에 관한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 장	시 점	종 점
신 설	종로	2	15	27.5	사당동산 45 - 8 호	사당동산 45 - 8 호
"	"	2	"	23.5	"	"
"	소로	2	8	83.0	"	"
"	"	2	8	49.5	"	"
"	"	3	6	58.5	"	"
"	"	3	6	169.0	"	"
"	"	3	6	72.0	"	"
"	"	3	6	72.0	"	"
"	"	3	6	72.0	"	"
"	"	3	6	72.0	"	"
"	"	3	6	216.0	"	"
"	"	3	6	69.0	"	"
"	"	3	6	70.5	"	"

나. 공원조서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아동공원	상설제 1공원	사당동산 45-8호	506	
"	"	상설제 2공원	"	360	

별첨 축랑성파도 참조

1978. 3. 2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산 45-8 호
 2. 사업의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3. 사업시행면적 : 22,306.7 평방미터 (6,759.6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28-2 호 한보주택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태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 - 사업시행허가 시행일 나) 준공 - 1978.5.31. 끝.

㉞ 서울특별시공고제 1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22 호 < 75.8.14 > 로 실시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46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3.27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 내역
 학교명 : 중등국민학교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95 의 1 의 12 필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사업기간 : 75.8.14 - 77.12.30 끝.

㉞ 서울특별시공고제 107 호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상품 수거 및 파기명령 (처분) 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 (처분)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8.3.
 서울특별시 장

1. 처분대상상품

제 조 업 자		상 품		불합격항목	비 고
업 체 명	소 재 지	품 명	규 칙		
삼양식품공업(주)	도봉구도봉동 30-1	고형세탁비누	선품 1,3호	알콜불용분 불용분 함량	
에경유지공업(주)	영등포구구로동 501	,	선품 2,4호		

2. 처분내용 : 수거 및 파기명령 (처분)
 3. 수거 및 파기기간 : 1978.3.27 - 1978.4.26 (1개월간)
 4.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미달

◎ 서울특별시공고제 108 호

품질검사결과 불합격상품
수거및파기명령(처분)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

합격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및 파기명령(처분)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8.3.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상품

제 조 업 자		대표자	상품명	불합격항목	비 고
업 체 명	소 재 지				
보성자석판	마포구연남동 241-17	김거복	복수판	낙하강도미달	

2. 처분내용 : 수거및파기명령(처분)

3. 수거및파기기한 : 1978.3.27-
1978.4.26 (1개월간)

4.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기준미달
결

◎ 서울특별시공고제 109 호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
변경및추가환지계획인가 공고

1. 서울특별시 이수토지 구획정리
조합으로 부터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환지계획 인가신청에 의하여
등 사업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해
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 권한 위임수탁
에 관한 제 25 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서와 같이 환지계획변경 및

추가환지계획을 인가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구획정리과와 이수 지구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모
이게 한다.

1978.3.
서울특별시장

(공 고 내 용)

가. 사업명 :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동, 석촌동 일부

다. 환지계획변경및추가계획인가면적 :
28,180 평

라. 관계도면및조서 : 별첨(생략)

㉞ 서울특별시 공고제 111 호

서울특별시 연료공업
협동조합 해산공고

서울특별시 단체 감독규칙 제 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다.

1978.3.27

서울특별시 장

다 음

- 1. 해산일자및 사유 : 78.3.15 임시총회
의결에 의하여 해산
- 2. 단체의 명칭 : 서울특별시 연료공
업협동조합
- 3. 대표자의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용두동 231-7
- 4. 성 명 : 송 광 옥
- 5. 주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11번지
- 6. 청산인 : 송 광 옥

끝.

㉟ 서울특별시 공고제 112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73 호 (78.
3.7) 로 환지계획 변경공람 공고
한 영동 제 2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
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
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
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 2.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
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
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19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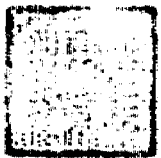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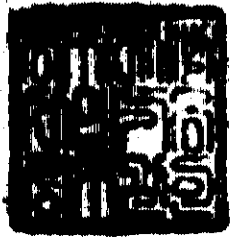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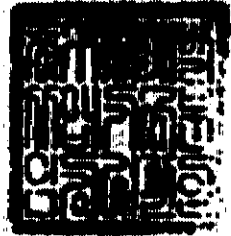
나. 변경면적 : 3,584.2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역삼동 산 78 의
23 호의 8 필지

<p>② 서울특별시공고제 113 호</p> <p>환지계획 변경인가및 환지 예정지지정공고</p>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 호 (78.3.7) 로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한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p> <p>2.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p>	<p>1978.3. 서울특별시장</p> <p>(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p> <p>가. 사업명 :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 13,733.6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산 5 의 1 호외 49 필지</p> <p>②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p> <p>공인선조 사용승인 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78.3. 서울특별시장</p> <p>1. 사용개시일자 : 1978.3.30 2. 안 명 : 다음</p>
<p>공 인 의 인 영</p>	
 <p>종로구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p>	 <p>종로구제개발사업기금분입정리관인</p>



중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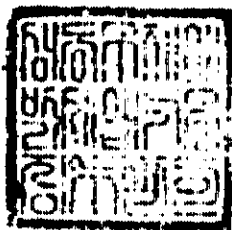
중구재개발사업기금분입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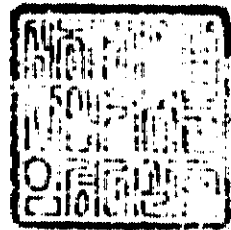
동대문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동대문재개발사업기금분입경리관인



성동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성동구재개발사업기금분입경리관인



성북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성북구재개발사업기금분입경리관인



도봉구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도봉구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서대문구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서대문구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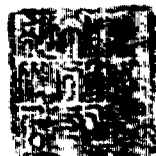
마포구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마포구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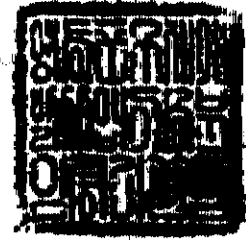
용산구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용산구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영등포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영등포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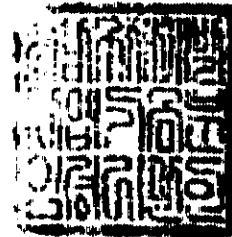
관악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관악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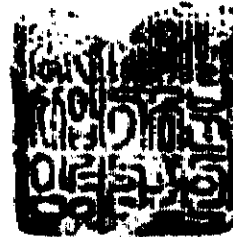
강남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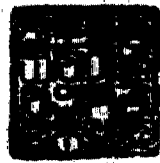
강남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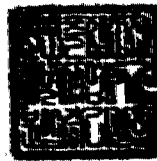
강서구재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강서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천호출장소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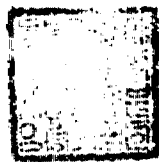
천호출장소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은평출장소제개발사업기금징수관인



은평출장소제개발사업기금분임경리관인



동부건설사업소재개발사업기금
분임경리관인



서부건설사업소재개발사업기금
분임경리관인



남부건설사업소재개발사업기금
분임경리관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118 호

간이요금징수소설치공고

서울특별시 관내 남부순환도로(유로)구간중 영등포구 구로동 682번지상에 간이요금 징수소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을 유로도로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3.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1. 통행로징수자 : 서울특별시장
- 2. 유로도로구간 : 영등포구 독산동~강서구 신월동
- 3. 통행로의징수기간 : 78. 4. 1 - 97.12.31
- 4. 통행로 징수대상과 금액

대 상	금 액
2, 3 톤 차	50 원
승용차, 버스, 화물차	100 원
특수차 (10 톤이상화물차포함)	200 원

- 5. 통행로 면제 받는 차량
 - 가. 군용 및 군작전용 차량
 - 나.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다. 교통 단속 차량
- 라. 소방기관에서 수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마. 채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증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차량
- 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국민으로서의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 차량
- 사. 검찰, 경찰 기타 그 경호용 차량
- 6. 통행로 징수 방법
 - 현금 또는 회수권으로 요금소에 징수

㉡ 서울특별시공고제 120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85 호 (78. 3.11)로 환지계획 변경공람 공고한 영등 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 하엿기 공고 합니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될것이나, 마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8. 3.

서울특별시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8,844.7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서초동 503외 3호외 117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21호

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른서류공람및의견청취

1. 성북구청 시행 구서울상대앞-월곡동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시키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마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78.3.31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1. 사업의집행지 : 중암동 1,2,3,4,7,8,9,10,109번지 일대 및 하월곡동 27,29,30,31,32,34,35,37,46번지 일대

2. 사업의종류 : 구 서울상대앞-월곡동간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도로 B=15M, L=850M, 3=35M, L=250M. 하천부개 A=2,700M²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학공및준공예정일 : 1978.4. - 1978.12.

6.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별지 토지조서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끝

공사 토지 가격 조서

19 사정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정소유자		비고
					단가	금액	
1	하월곡동 37-12	대	433			제기동 784	조귀염외 1인
2	" 35- 3	대	10			종암동 8-24	이재현
3	" 35- 2	대	794			종암동 8-24	이재현
4	" 27-134	대	22			종암동 124-83	김상순
5	" 27-135	대	10			종암동 124-83	김상순
6	" 30- 7	대	236			하월곡동 30-1	임성호
7	" 31- 3	대	104			하월곡동 32-6	구재남
8	" 32-10	대	141			하월곡동 32-6	구재남
9	" 32-11	대	23			하월곡동 32-6	구재남
10	" 32-12	대	155			수원시지동 349	김창수
11	" 32-13	대	28			하월곡동 13	양본택용
12	" 46-41	대	33			하월곡동 46-41	양연자
13	" 46-42	대	13			하월곡동 33	김갑배
14	" 46-40	대	63			하월곡동 33	김복을
15	" 46-101	대	8			하월곡동 46-87	정인옥
16	" 46-102	대	4			하월곡동 58	소공오랑위
17	" 46-103	대	151			하월곡동 58	소공오랑위
18	" 46-104	대	38			하월곡동 58	소공오랑위
19	" 33- 7	대	34			하월곡동 33	권홍택
20	" 33-52	대	2			하월곡동 33-15	이병성

52-40

제 646 호 시

보

1978.3.29

229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정소유자			비고
					단가	금액	주소	
21	하월곡동 33-1	대	4			하월곡동 33-15	이병성	
22	" 33-8	대	39			하월곡동 33-8	김새원	
23	" 33-53	대	216			철운동 56-80	김춘섭	
24	" 33-53	대	10			하월곡동 33-35	박재경	
25	중앙동 110-20	답	9			계기동 337-46	김명환	
26	" 1-21	답	1,045			계기동 198	이용구	
27	" 110-22	대	42			중앙동 110-9	박상열	
28	" 110-23	도	5			계기동 137-46	김명환	
29	" 2-17	대	25			중앙동 2-2	최필신	
30	" 2-18	대	19			중앙동 2-5	김장호	
31	" 2-19	대	15			중앙동 2-14	이정근	
32	" 2-20	대	19			중앙동 2-4	한호웅	
33	" 1-20	대	117			중앙동 1-20	양재속	
34	" 1-86	대	163			명동 2가 50-94	삼석회	
35	" 2-3	대	162			효제동 133-2	중앙회	
36	" 109-47	대	21			"	"	
37	" 1-72	대	60			계기동 137-118	한동수	
38	" 108-80	도	26			중앙동 68	정대인	
39	" 108-83	도	10			중앙동 68	정대인	
40	" 108-81	도	89			중앙동 68	정대인	

제 646 호

시

보

1978.3.29 52-41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정		주소	자성명	비고
					단가	금액			
41	중앙동 4-69	전	33				신설동 146-5	김준환	
42	" 4-83	대	43				부작동 바포 A.P.T 65동 202	박준병	
43	" 3-1299	대	30				중앙동 3	양영부	
44	" 3-1300	대	18				돈암동 22-2	현복운	
45	" 3-1301	대	37				중앙동 3-32	김영한	
46	" 3-1302	대	1				중앙동 3-33	김순환	
47	" 3-1303	대	83				중앙동 3-31	김이세	
48	" 3-382	대	33				중앙동 3-382	송영대	
49	" 3-383	대	23				중앙동 3-383	김광훈	
50	" 3-384	대	13				중앙동 100	최용운	
51	" 3-1305	대	14				중앙동 3	송영건	
52	" 3-1306	대	6				중앙동 368	송영주	
53	" 3-371	대	13				중앙동 100	최용운	
54	" 3-1307	대	35				중앙동 3-373	홍현식	
55	" 3-374	대	40				중앙동 3-374	정도영	
56	" 3-1308	대	6				보문동 1가108-18	조태형	
57	" 3-111	대	46				중앙동 3	최진규	
58	" 3-1309	대	108				중앙동 3	최진규	
59	" 3-1310	대	75				중앙동 121	조빈	
60	" 3-1311	대	68				중앙동 121	조빈	

52-42 제 646호 시 보 1978.3.29

230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세평균치	사정		소유주	자성명	비고
					단가	금액			
61	송암동 3-1312	대	4				송암동 3-714	윤순영	
62	" 3-1313	대	2				용두동 709	김만근	
63	" 3-1314	대	41				용두동 89-9	김정배	
64	" 3-123	대	20				송암동 3-123	김학보	
65	" 9-120	대	33				삼선동 5가 150-7	기조인	
66	" 9-121	대	14				송암동 3-374	정도영	
67	" 8-250	대	3				송암동 8	이종구	
68	" 8-251	대	19				장위동 68-138	김원재외 6인	
69	" 8-252	대	30				송암동 8-32	조필호	
70	" 8-247	대	23				송암동 8-35	박문규	
71	" 8-253	대	29				송암동 8-37	조충호	
72	" 8-254	대	20				송암동 8-39	조세호	
73	" 7-119	대	3				송암동 7-103	황광형	
74	" 8-249	전	128				저농 2가 24-1	토지값고	
75	" 12-62	대	989				저농 2가 24-1	토지값고	
76	" 28-353	대	63				저농 2가 24-1	토지값고	
77	" 28-354	답	4				저농 2가 24-1	토지값고	

북 646호

기

보

1978.3.29 52-43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점		소유자		비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1	하월곡동	37-12	목조, 도단	109㎡			용두동 82~6	한경열	
2	"	30~1	연화조, 평목계	42㎡			하월곡동 30~1	임성호	
3	"	32-1	주택 및 공장	21㎡			하월곡동 32-1	구재남	
4	"	33-7	목조, 시멘	27㎡			" 33-7	동완준	
5	"	33-1	와즙, 주택	6㎡			" 33-1	이병성	
6	"	33-2	시멘, 부러조	29㎡			" 33-2	신말용	
7	종암동	110~5	시멘, 와즙	15㎡			종암동 110~5	박순규	
8	"	2-5	연화조, 시멘	8㎡			" 2-5	김장호	
9	"	2-14	와즙, 주택	10㎡			" 2-14	김옥대	
10	"	3-1	연화조, 시멘	2㎡			" 3-1	이봉용	
11	"	3-111	목조, 와즙	40㎡			" 3-111	조태연	
12	"	3-110	주택	6㎡			" 3-111	조태연	
13	"	3-112	목조, 와즙	34㎡			" 3-112	이순이	
14	"	3-113	주택	36㎡			" 3-113	조빈	
15	"	3-114	시멘, 벽돌	25㎡			" 3-114	조빈	
16	"	3-714	평목계, 전포	7㎡			" 3-714	윤순영	

52-44

제 446 호

지

부

1978.3.29

<p>◎ 서울특별시공고제 122 호</p> <p>도시계획사업실시에따 른서류공람및의견청취</p> <p>1. 성북구청 시행 하월곡동 지내 도로정비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 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 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코져 이에 공고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 명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를 가불함.</p> <p>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 3.3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랑 계 요</p> <p>1. 사업의집행지: 성북구 하월곡동 77번지 일대</p> <p>2. 사업의종류: 하월곡동 지내 도로 정비공사</p> <p>3. 사업의규모: 콘크리트포장 49.40a 하수도 (흡관 D=45cm) L=240 M 형측구 L=483 M 기타 부대공사</p> <p>4.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78.3.13 ~ 78.6.10</p> <p>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별첨토지조서</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끝</p>
--	---

번호	소재지	지목	수용면적	산술평균치	사정		소유자		비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1	하월곡동 77번지 34호 ~ 77번지 189호	도로	1,920㎡				시유지		
2	하월곡동 77번지 58호 ~ 77번지 469호	도로	2,240㎡						
3	하월곡동 77번지 763호 ~ 77번지의 696호	"	2,352㎡						

◎ 서울특별시공고 제 123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외청사)

실시 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3 호 (77.11.4) 로 결정 고시된 마포구청 청사 부지에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77.3.31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성산동 산 11 번지의 43 의 6 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용외 청사) 마포구청 청사
3. 사업의규모(면적)
3,738 평(도로 1,160 평 포함)
4. 사업의시행자 : 마포구청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78.4- 78.12
6.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조서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순위	위 치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마포구성산동 산 31	임야	120평	경기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49	권진행	
2	" 산 11-47	"	157"	" 금당리487	차진섭	
3	" 산 11-48	"	1,003"	"	학교법인 한양학원	
	계		1,280			

◎ 서울특별시공고제 124 호

도시계획시설 (전신전화국) 건물신축공람공고

- 1. 제신부장관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 (전신전화국) 건물신축을 위한 사업 인정신청이 있어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 10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전신전화국)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을 인정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경비과와 제신부 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4.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25 호

환지처분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공고

-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별첨도서

내용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한다.

- 2.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에 공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다.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로 갈음한다.

1978. 3 .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치 : 관악구 봉천, 신림, 영등포, 독산동 일부토지
 다. 면적및필지수 : 7,391필
 (579,947.6평)

◎ 도봉구공고제 294 호

공인신조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개발사업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도봉구 계획개발 사업기금 회계적 공무원의 공인이 신조되었기 이를 공고함.

1978.3.31.

1. 신조공인명 : 도봉구 재개발사업기
금 징수관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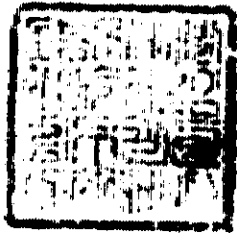
2. 사용개시일 : 1978.3.30.(09:30)

3. 신조공인인명 : 별첨.

도 봉 구 청 장

공 인 인 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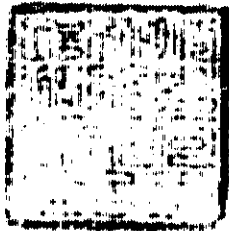


영

공인명

1. 도봉구재개발사업
기금분임징수관
(도시정비과장)

인



영

공인명

2. 도봉구재개발사업
기금분임징수관
(토목과장)

인



영

공인명

3. 도봉구재개발사업
분임기금지출원
(재무과장)

◎ 서대문구공고제 12 호

서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회
제공인신조사용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외
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사업기금 서
대문구회계 관계공인을 신조 사용케
되었기 공고함.

1978.3.30.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용개시일자 : 1978.4.1.

2.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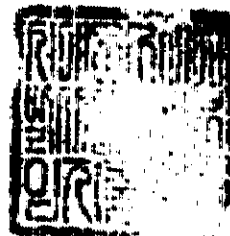
서기(도
대문
구분시
재임정
재개발
사업관)



서기(도
대문
구분
재임목
재개발
사업관)



서기(재
대문
구분
재임무
재개발
사업관)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 19 호

공인 신조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금사업 수입지출관 공인을 신조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78. 3.

마 포 구 청 장

1. 공인명 : 마포구 재개발 사업기금
분임징수편의 인 (도시정비과)

2. 공인사용개시일자 : 1978. 3. 28.

3. 공인의 모형



1. 공인명 : 마포구 재개발사업기금
분임징수편의 인 (토목과)

2. 공인사용개시일자 : 1978. 3. 28.

3. 공인의 모형



1. 공인명 : 마포구 재개발사업기금
분임지출원

2. 공인사용개시일자 : 1978. 3. 28.

3. 공인의 모형



◎관악구공고제 88 호

공 인 의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 1 동장의 공인 (직인 및 제인) 을 1978. 3. 1. 09:00부터 제각 사용하고 구 공인은 동일자로 폐기함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 공인의 인영 (별첨)

1978. 3. 30

관 악 구 청 장

공 인 의 인 영

1. 신조공인의 인영
상도제 1 동장직인



상도제 1 동장직인



2. 제인공인의 인영
상도제 1 동장제인



상도제 1 동장제인



성 명	발 명	사	함	임 용
김 태 주	성 농 구	호 농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선 규
전 훈 식	· · ·		· · ·	·
김 한 종	성 북 구		· · ·	·
장 무 일	도 봉 구		· · ·	·
민 성 식	· · ·		· · ·	·
유 만 종	· · ·		· · ·	·
권 영 근	· · ·		· · ·	·
노 기 영	· · ·		· · ·	·
이 선 회	마 포 구		· · ·	·
송 영 범	· · ·		· · ·	·
노 영 우	용 산 구		· · ·	·
김 중 학	관 악 구		· · ·	·
엄 영 태	· · ·		· · ·	·
박 명 신	· · ·		· · ·	·
구 본 욱	· · ·		· · ·	·
이 명 국	은 평 출 장 소		· · ·	·
유 경 열	천 호 출 장 소		· · ·	·
이 순 연	동 대 문 구		· · ·	·
김 의 성	성 동 구		· · ·	·
심 상 욱	서 대 문 구		· · ·	·
이 춘 분	중 · 구		· · ·	·
이 병 일	마 포 구		· · ·	·
이 향 태	영 동 포 구		· · ·	·
지 현 순	서 대 문 구		· · ·	·

성 명	발 명 사 항	사 항	임 용
홍성택 장기동 김한규 이상민 박명숙 이종백 변중철 김광예 이재석	시정개발담당관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과 세무조사과 시민과 법무과 업무과 아동과 문화공보관실	호봉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신규